

의안번호	2219726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6.7.14.
추계번호	26B3304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3 (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등)	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·정보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1조의3 (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·정보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 「기상산업진흥법」은 기상사업자를 정의하고(제2조),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기술 연구·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(제9조), 해외진출 지원(제11조의2) 및 기상정보 제공(제15조) 등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
 -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「기상산업 활성화」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기상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
 - 참고로, 「기상산업 활성화」 사업은 기상산업 시장 조사·분석 및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기상산업육성 사업과 기상기업의 창업·성장·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상기

업지원 사업 등의 내역사업을 포함하며, 동 사업의 예산은 2025년 기준 142억 700만원임

[표 1]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 주요 내용 및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명	사업 목적	예산
기상산업 인프라 강화	· 기상산업분야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· 미래 신산업분야(AI, 빅데이터 등) 수요 대응을 위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, 산업계 공인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기상산업 인적 인프라 기반 마련	1,517
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	·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역량을 강화하고,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국민 안전을 도모 · 기상 R&D 성과를 기술이전·실증·시장진입까지 연계하는 전주기 사업화 체계 구축을 통해 기상산업 경쟁력 강화	2,097
기상기업지원	· 국내 초기·도약 기상기업의 창업·보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및 투자유치 맞춤형 컨설팅,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진입 지원과 기상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(패키지형 수출 솔루션 발굴 및 국가·국제 표준화(KS-ISO) 활동)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	1,388
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운영	·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기상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시장 확대	9,205
합 계		14,207

자료: 기상청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를 위한 비용의 규모 및 용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